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지 방 소 방 기 관 설 치 에 관 한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 또는 소방위에서 소방령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없음

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

1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(市)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소방서로 한정하여 그 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.
2.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으며, 그 운영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혁신행정부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7247